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



홍문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 21일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경기도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글은 토론회에서 발표된 홍문기 교수의 발제문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향을 기술하고 있어 이번 호에 수록합니다. 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 자료실 내 각종자료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성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조정대상 매체로 포함하여 기존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인터넷 매체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자 언론중재제도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대부분의 뉴스가 포털을 통해 소비됨에도 포털은 관련 법률에 언론으로 정의되지 않아 포털이 매개한 뉴스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할 수 없

는 제도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009년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법은 포털과 같이 보도를 매개하는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조정대상으로 포함했고, 인터넷 기반 매체는 위원회의 주요 조정 대상 매체가 되었다.

침해적 보도의 무한 복제·전파와

피해구제업무의 공백

그런데 각종 정보의 유통 채널이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고 뉴스 이용 양상이 변화

하면서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에 공백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침해적 보도가 무한 복제되고 전파되는 상황에서 검색을 통해 문제가 되는 기사와 정보는 언제나 무한정 재생 가능해졌고, 언론조직에 의해 생산된 기사가 언론조직이 다루는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는 삭제되어도 각종 포털 사이트, 블로그, 카페, 뉴스스크레이션, SNS에서는 여전히 유통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까지 인격권 침해 기사에 대해 정정, 반론, 추후보도, 손해배상만 이용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는 피해구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언론피해구제 쟁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법적 장치는 보도가 지면 또는 방송을 통해 단발로 제공되던 올드 미디어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록 언론중재법의 제·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이나 포털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가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그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해 구제 방법이나 절차가 개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가 주요 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드 미디어 중심 구제제도로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한번 생산된 보도의 저장성이 영구적인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정보도 등의 1회적 대응으로는 영구 게재되는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삭제를 통한 ‘피해상태의 제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주장은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13년 3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2010다60950판결은 인터넷 기사가 웹사이트에 축적되고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통해 열람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명예훼손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기사삭제청구를 명시적으로 인용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나 매개로 인한 피해의 발생 시 정정, 반론, 추후보도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법 이론상 이미 확립되어 판례에 의해 발전돼왔다. 또한 앞서 설

명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구체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등과 별개로 기사삭제를 통한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고, 이로 인한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기 때문에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즉, 제척기간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 반론보도의 경우 해당보도가 있음을 안 지 3개월 이내, 보도가 있는 지 6개월 이내로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추후보도의 경우는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한번 이루어진 보도의 경우 지속적인 검색이 가능하므로, 만일 그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의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여 그 침해 또는 우려가 존재하는 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 법제에 의하면 인격권은 대세적 효력에 의해 그 방해자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방해상태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는 그 주체가 생존하는 한 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2013년 명예훼손법

역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1년으로 정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위 기간 제한에 의해 피해구제를 거부함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고, 특히 악의적 허위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위 1년의 제소기간은 기타 형평법상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제·전파된 권리 침해적 보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 언론중재제도에서는 언론사 등의 보도나 매개로 인한 명예훼손 등 침해적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중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동일한 보도의 내용이 블로그나 카페 등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상 언론으로 정의되지 않은 곳으로 복제되어 전파된 경우는 ‘정보’로 취급되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동일보도가 복제·전파된 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괄 구제를 받지 못하고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일보도가 인터넷상 블로그, 카페 등에 복제·전파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언론조직이 생산한 기사가 복제·전파된 경우와 그 이후 발생하는 침해적 보도에 대해서는 그 원(原) 보도에 잘못이 있음이 인정돼 정정 등의 조정이나 결

정이 있어도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처럼 원 보도의 잘못이 인정돼 정정, 반론보도 또는 삭제가 이루어진 이후 원 보도의 내용이 블로그나 카페 등에 복제·전파되어 존재할 경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구제됐다고 할 수 없다. 원 보도 언론사의 보도가 명예훼손적 내용일 경우, 언론사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으로 복제되어 나간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이 가능해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므로 복제된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적 댓글에 대한 처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원 보도뿐 아니라 잘못된 보도에 근거한 댓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요청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보도로 인한 위법적·침해적 댓글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괄 구제 차원에서 댓글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에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잘못된 보도를 바탕으로 한 댓글이나 글 자체에 명예훼손 등 침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에 대해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이 경우 기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돼 있는 사안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사 등이 인신공격이나 인종 차별성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청구 대상이 되는 ‘언론’의 범위를 정보 유통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저장·검색·유통되는 언론기사 및 언론기사에서 파생된 제반 정보에 의한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둘째, 오늘날 전통 언론매체에 적용되는 피해구제 제척기간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를 무력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원화 된 인터넷기사 및 인터넷정보 관련 피해구제시스템은 ‘사실상 언론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언론중재법 및 신문법상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뉴스 서비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통한 언론 정보의 유통량과 인격권 침해 표현 사례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중재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심으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기사 및 정보의 피해구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